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41
----------	-----

제출년월일 : 2011년 1월 일

제출자 : 제천시장

1. 제안이유

- 제천시는 한방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아 집중 육성한 결과 2010제천국제한방Bio엑스포를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한방특화 도시의 기반을 구축 하였으나,
-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구의 부재로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바,
- 엑스포 이후 제천시 한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관련 사업 전반을 추진할 재단법인이 필요하게 되었음.
- 따라서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단 설립 목적 및 정관(안 제1조 ~ 4조)
- 시행 사업(안 제5조)
- 재단의 재산조성(안 제6조)
- 재단의 재정지원(안 제7조)
- 재단 설립 운영을 위해 필요한 공유재산의 대부(안 제8조)
- 재단 사업계획 승인 및 결산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11조)
- 재단에 대한 지도·감독(안 제12조)
- 업무의 위탁,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안 제13조 ~ 14조)

3. 의안전문 : 불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나. 입법예고기간 : 2010. 12. 17 ~ 2011. 1. 6(20일간)

다. 2011년도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 원안가결

5. 관계법령 : 불임(민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등)

첨 부 1. 의안전문 1부.

2. 관계법령 1부.

3.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사본 1부.

제천한방바이오진홍재단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지역 한방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제천한방바이오진홍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법인격) 명칭은 제천한방바이오진홍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하며, 법인격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제천시 관내에 둔다.

제4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당시의 자산종류 및 평가액
6.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재단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2. 재단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5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개발
2. 한방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의 육성 지원
3. 한방바이오산업 관련 연구개발 지원 사업
4. 마케팅 및 홍보 지원 사업
5. 한방바이오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협력 사업
6. 한방바이오산업 관련 박람회(엑스포) 추진

7. 제천시의 위임·위탁사업
8. 기타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재산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및 자치단체의 출연금, 보조금 및 현물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 및 기타 재산
3. 재산의 운영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제7조(재정지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 사용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시의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 허가할 수 있다.

제9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사업계획 승인 등)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위탁시에는 사무처리 비용을 별도 협약에 의하여 보조 할 수 있다.

제14조(공무원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재단의 설립·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민법

[법률 제9650호, 2009. 5. 8. 일부개정]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95호, 2008. 3. 14. 일부개정]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 기준)

-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 ② ~ ③ (생략)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감독)

- ①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를 감독한다.
- ②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의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3.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경우
- ③ 주무관청은 수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다

고 인정되면 그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지방재정법

[법률 제10221호, 2010. 3. 31. 일부개정]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생략)

제천시보조금관리조례

[조례 제794호, 2007. 3. 24. 일부개정]

□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0343호, 2010. 6. 8 일부개정]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 ④ (생 략)

제천시 공고 제 2010 - 1336호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2. 17

제 천 시 장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제천시는 한방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아 집중 육성한 결과 2010제천국제한방Bio엑스포를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한방특화 도시의 기반을 구축 하였으나
-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구의 부재로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바,
- 엑스포 이후 제천시 한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관련 사업 전반을 추진할 재단법인이 필요하게 되었음.
- 따라서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 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재단 설립 목적 및 정관(안 제1조 ~ 4조)
- 시행 사업(안 제5조)
- 재단의 재산조성(안 제6조)

- 재단의 재정지원(안 제7조)
- 재단 설립 운영을 위해 필요한 공유재산의 대부(안 제8조)
- 재단 사업계획 승인 및 결산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11조)
- 재단에 대한 지도·감독(안 제12조)
- 업무의 위탁,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안 제13조 ~ 14조)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서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일까지 제천시장(참조 : 한방경제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팩스,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나. 기재내용 :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내용(찬, 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12-2번지)

제천시청 한방경제과 이찬우(전화 641-5102, 팩스 641-5079)

★주무관	한방유통팀장	한방바이오과장			
김춘호	유영복	김태원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보고서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공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입법예고 조례명 :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안)
2. 공고번호 : 제천시공고 제2010-1336호
3. 공고기간 : 2010. 12. 17 ~ 2011. 1. 6(20일)
4. 공고매체 : 제천시보 및 제천시홈페이지(입법예고)
5. 공고내용 : 별도붙임
6. 공고결과
 - 조회수 : 75명
 - 의견제시자 : 없음

붙임 : 공고안 1부(별지). 끝.